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행에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금리인하 요구 등) 제3항에 의거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23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에 의거,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본인(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 여신

은행의 신용평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산정되는 가계여신과 기업여신에 적용됩니다. 다만, 가계여신의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대출: 당행은 2014년 3월부터 개인금융업무를 종료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개인신용대출은 모두 개인회생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상 개별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이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 및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신용도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에, 채무자의 취업, 승진, 재산/소득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품은 차주에게 소구권이 없거나 제한된 비소구조건의 선적서류 매입, 비소구조건의 국내/수출 채권매입 등의 수출입여신을 포함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사유

- 가계여신: 해당사항 없음
- 기업여신:
 - 회사채의 등급이 상향된 경우
 - 재무제표상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기타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보제공으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신청방법

- 가계여신: 해당사항 없음
- 기업여신: 신용상태 개선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Relationship Manager에게 문의하고 담당 Relationship Manager의 email 및 email 'credit.service.sel@kr.hsbc.com'로 "금리인하요구"의 제목으로 email을 전송하여 접수합니다.

기타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